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93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박선원 · 이수진 · 유동수
허성무 · 김승원 · 강준현
임호선 · 신정훈 · 부승찬
고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관리·감독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의2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를 “경고처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연장복무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3.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

지 못한다.

4. 주의는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생략) <u><신설></u>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생략)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u> 1. ~ 7. (생략) <u><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경고처분한다. <단서 삭제></u> 1. ~ 7. (현행과 같음) ③ <u>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u>

④ (생 략)	<u>있다.</u> <u>1. 연장복무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u> <u>2.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u> <u>3.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u> <u>4. 주의는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u> ④ (현행과 같음)
----------------	---